

# 진상조사 요청서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진상조사 등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신청인들의 지위

신청인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합니다) 소속 변호사들로서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을 변론해 온 변호인들입니다. 신청인들은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중 12명의 여성 종업원들 부모들로부터 소송, 구제활동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구금되어 있던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 서신접수, 법원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변호인 접견권 침해 소송 등의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 2. 사건개요

가. 2016. 4. 총선을 앞두고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을 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고 보도를 했으나 이어서 북한 부모들이 납치를 주장하여, 진상을 확인하고자 신청인들인 민변 변호인단이 북한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법원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하자 위 종업원들이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출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된 사건으로 현재까지 기획탈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위 종업원들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여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 국정원은 위 종업원들에 대하여 부모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들의 접견을 불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신조차 전달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위 종업원들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커졌고,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재판에 당사자로서 출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대신하여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여 오히려 그 진의에 의혹이 커졌습니다.

다. 최근 국정원은 위 종업원들이 국정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정착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나 실제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신체적, 정신적 억압 없이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들리는 소문에는 일부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나 국정원에서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상황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 종업원들이 탈북하여 귀국할 당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 3. 진상조사 요청사항

가. 기획탈북의혹에 대한 조사

- 북한해외식당 종업원들 13명이 집단 탈북을 한 사건을 두고 북한해외식당 지배인의 사익추구와 국정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12명의 여종업원들을 속여 탈북 및 우리나라 입국을 시켰다는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중국 현지 조사 및 식당 지배인 면담 결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됨).

- 국정원은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북한해외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관행 및

탈북민 신원보호 라는 국가의 책무와도 배치되는 행태로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 공개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조사

-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을 하면 국정원이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최장 6개월간 수용되어 조사를 받는데, 국정원의 보호 및 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보호 및 조사 과정에서 외부와 일체 차단되어 가족 면회, 변호인 접견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외부에 알리거나 외부에서 알아낼 방법이 거의 없어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부모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들의 접견 및 서신거부 불허의 위법성이 존재하고,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법상 변호인 접견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에서 인권침해 논란 개선책으로 인권보호관제도를 신설하였으나 국정원이 임명하는 직위이고, 기획탈북의혹 사건에서도 의혹해소를 위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 서울시공무원간첩 조작사건에서도 유우성의 여동생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되었고, 조사를 받던 한종수라는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존재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발간한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

는 것을 포함하여 폭언, 심야취조, 장기간 조사, 성적수치심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 국정원에서 그간 북한이탈주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 위 종업원들의 현재 상황 및 진정한 의사 확인

- 식당종업원들의 탈북 및 우리나라에 보호신청을 한 진정한 의사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

- 식당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 재판에서 국정원과 위 식당종업원은 수용자와 피수용자 관계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식당종업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모순 발생

- 국정원은 식당종업원들이 보호결정을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확인된 바 없고,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에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 4. 신청인들의 요구사항

가. 위와 같은 진상조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만약 위법사실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 위 진상조사 등의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위 종업원들의 상태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

해 면담을 주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 신청인들은 본 진상조사 요청과 별도로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해 국정원장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 국정원장과의 면담 이외에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와의 면담도 요구하며, 이러한 면담을 통해 위 사건의 의혹을 설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요구합니다.

2017. 6. 27.

위 신청인

**변호사 천낙봉**

**변호사 장경욱**

이상,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2, 4층(서초동, 영생빌딩)

법무법인 상록

대표전화 02-3482-3348, 팩스 02-3482-4477

**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남성욱**

**변호사 오민애**

이상,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14, 6층(서초동, 일괄빌딩)

법무법인 향법

대표전화 02-582-0606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자연**

이상,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3길 5, 6층(신사동)

법무법인 양재

대표전화 02-6925-2222

**변호사 양승봉**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4, 6층(서초동, 신정빌딩)

법무법인 율

대표전화 02-523-9904

**변호사 설창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6, 601호(서초동, 경원빌딩)

대표전화 02-521-8119

**변호사 신윤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5, 4층(서초동, 엠엘빌딩)

대표전화 02-6203-1020

**변호사 채희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504호 (장항동, 로스텔)

법무법인 현재

대표전화 031-932-6700, 팩스 031-932-6711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귀중**